

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9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6월 16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석면안전해체감리인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재 기재하는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바,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안 제12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와 제12조의3(석면해체 작업감리인의 등록 등)을 삭제함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어린이,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&lt;개정안과 같음&gt;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2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 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
〈신 설〉

제12조의3(석면해체작업감

〈삭 제〉

리인의 등록 등) ① 석면  
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 
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 
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 
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  
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 
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  
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

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 
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  
면농도기준(이하 이 조에  
서 “석면농도기준”이라 한  
다) 준수 여부 관리

3.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  
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  
의 이행 여부 확인

4.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  
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

5. 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 
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

6.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 
정하는 업무

##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어린이,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9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</u> <u>시장은 어린이,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</u> <u>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</u> <u>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</u> <u>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